

광주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4가합53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박기홍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정관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4. 10. 22.

판결 선고 2024. 11. 19.

주 문

-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4. 2. 1.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을 3,376,876,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1] 기재 채권 중 위 제1항의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하고, D, E, F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음에도 청구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2024. 10. 22.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설령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재판장판사유상호

판사장유나

판사김대욱

별지

1) 원고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제3채무자들인 D, E, F에게 [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만을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원고의 청구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선택한다.